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
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지역균형
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
자치법」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
정비하려는 사항으로,
-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
변경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
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